

2025년 제1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2025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지정 개요

- **(목적)**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매장 모집**
- **(법적근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나. 특화된 녹색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지정된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특화매장 지정 시, 이전 녹색매장 지정 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 특화된 방식 관련 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2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기간) 2025.1.17.(금)~1.24.(금) 18:00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worldnet@keiti.re.kr)
- (제출서류)

구 분	녹색매장		특화된 녹색매장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녹색매장 신청서	○	○	○	○
녹색매장 운영계획	○	○	○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	○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	○	○
평점항목 증빙자료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	-	○	○

- (지정절차)

- 신청서 제출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위원회 → 결과 통보
- ※ 신청서 접수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1~2개월 소요

3

신청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 2284-1924, worldnet@keiti.re.kr